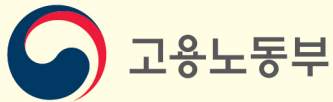


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
편리하고 신속하게

일자리 안정자금

'18년 1월부터
시행됩니다


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(18. 1. 1. 부터)

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란?

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※ 예산 심의과정 중으로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

지원대상

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

- ◆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
- ◆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(신청일 기준)
※ 단,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
- ◆ 노동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

지원금액

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

- ◆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



지원 방식

- ◆ 사업시행기관: 근로복지공단
- ◆ 지급방식: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
- ◆ 지급방법: 현금지급 및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

신청서 접수: 온라인·오프라인 모두 가능



- ◆ 4대 사회보험공단
(근로복지공단, 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)
- ◆ 고용노동부 홈페이지
- ◆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(오픈예정)



방문·우편·팩스 접수

- ◆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
- ◆ 고용노동부 고용센터
- ◆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

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10인미만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규 가입시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
(5인 미만 90%, 5~10인 미만 80%)



근로복지공단 1588-0075
고용센터 1350